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2026 제1회 국회포럼

지속가능성공시 입법화

2026. 2. 5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ntents

- I. 배 경
- II. 도입 필요성
- III.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
- IV.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
- V. 반기·분기보고서 적용 조정
- VI.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신설)

SNU Law

 서울법대

지속가능성 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법적 기반 확보

- 정보수요 충족
- 정보인프라 구축
- 국제적 금융환경과의 정합성

정보수요 충족

-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수요의 존재
-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인증/평가 체계를 통하여 정보의 품질 확보 필요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필요
- 재무적 정보와 함께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어 자본시장 발전의 법적 기초

국제적 금융환경과의 정합성

-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은 세계적인 추세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시행 또는 단계적 시행 중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핵심가치 또는 보호법익으로서 입법 필요성의 근거

국내 입법 움직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 2. ; 민병덕의원)

1. 현황

-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
-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정보비대칭과 지속가능성수준의 객관적 평가 곤란

2. 필요성

- 정보의 품질관리
-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확보

3. 주요내용

-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 (3) 반기·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신설)

1. 지속가능성
2. 정보의 품질 확보,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화
3.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① 지속가능성

-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고려는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지속가능성의 법적 의의
 - 정보측면
 - 규제측면

* 지속가능성과 ESG

② 정보의 품질과 실효성

- 투자자 신뢰의 전제로서 국제적 비교가능성
- 각국별 동일 기능 규제에 대해서는 동등성(equivalence) 판단에 따라 자국 규제 면제
 - *금융규제의 역외적용과 규제의 동등성 확보의 중요성
- 규제의 법적 지위는 실효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에 영향

③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
- 재무적 영향 있는 비재무적 정보는 이미 공시대상
-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해서는 국제금융환경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Ⅲ.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

1. 규제의 법적 지위 2. 고려사항

① 법률안

○ 제159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단, 본 호에 따른 의무는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서류에 기재할 수 있다.]"

② 규제의 법적 지위

○ 유통공시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으로 규정
-세부 공시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③ 고려사항

○ 재무적 영향 있는 비재무적 정보는 이미 공시사항임이 원칙
○ **정보의 품질**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비례
○ **실효성 확보수단**은 규제의 법적 지위에 연계
○ 국제적 입법동향 비교는 필수요소

IV.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

1. 규제의 법적 지위 2. 고려사항

① 법률안

○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기준 제정과 국제적 정합성

-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9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제정기관의 조직적 절차적 정당성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준제정기관에 대한 지원

- ⑤ 금융감독원은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

1. 규제의 법적 지위
2. 고려사항

② 규제의 법적 지위

- 기준의 법적 지위 명확화
-기준 위반 시 법적책임을 부인하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위탁·운영 체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
- 회계기준의 제정 및 위탁 체계와 동일

③ 고려사항

- 조직적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체계성과 일관성, 전문성과 책임성,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전제
- 기준 수용의 규범적 기초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단일화
-단일 기준으로 하되, 기업의 규모나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 또는 범위를 조정
- 기준 제정 조직과 절차의 공공성 확보
-**비용부담구조**와 관련 현재의 기관구조와 기준정립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기준제정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의 기반 확보

V. 반기·분기보고서 적용 조정

1. 규제의 법적 지위 2. 고려사항

① 법률안

○ 제160조 중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를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② 규제의 법적 지위

○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의무를 면제

③ 고려사항

○ 공시비용과 공시효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

VI.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신설)

1. 시행시기 2. 적용대상 3. 책임감경

1

시행시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비교사례

전자증권법 부칙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칙 제4조,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려사항

1. 공시의무자의 준비기간
2. 국제적 규제동향을 법 시행단계에서도 능동적으로 고려

VI.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신설)

1. 시행시기 2. 적용대상 3. 책임감경

2

적용대상

제159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단, 본 호에 따른 의무는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서류에 기재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으로 규정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와 기업의 공시정보 규모와 공시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비교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VI.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신설)

1. 시행시기 2. 적용대상 3. 책임감경

3

책임감경


제2조(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무 개시 후 최초 3개 사업연도와 관련한 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제444조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시행 후 3개 사업연도의 민사·형사·행정법상 책임 면책
-부칙에 면책기간과 면책 대상이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시
- 원칙중심규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할 경우 형벌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의무이행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의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규제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함께 고려

THANK YOU

감사합니다

SNU**Law**

 서울법대

